

제351회 임시회
2016. 10. 7.(금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6년 9월 27일
- 회부일자 : 2015년 9월 28일

3. 제정이유

-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“충북여성재단”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

4. 주요내용

- 재단의 설립 목적 및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3조)
 - (설립목적) 여성의 경쟁력 향상, 복지증진 및 양성평등 실현
 - (운영재원) 도 및 개인·기관·단체 등의 출연금, 수익금 등
- 재단의 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 - 여성·가족·다문화·청소년 관련 정책연구·개발,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교육·운영 사업 등
- 임원 및 이사회 등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7조)
 - 이사장, 대표이사, 이사회, 감사 및 사무처 등 설치·운영
- 재단운영 및 제재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~14조)
 - 사무범위, 의결절차 및 행위제한 등 책임범위 규정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 검토

- 충북여성재단은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충북연구원의 타당성 검토와 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('16. 4. 29) 및 행정자치부 협의('16. 7. 12)를 거쳐 2017년 3월 설립을 예정으로 추진 중임.
- 타 지역의 경우 대전, 세종, 충북, 경남을 제외한 13개 시·도에서 여성재단을 설립·운영 중에 있음.
-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(2011. 9.15)과 「양성평등기본법」(2014. 5. 28)의 제정·시행과 여권 신장 및 성 주류화의 확대가 요구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, 여성능력개발, 문화활동 및 권익증진, 여성 관련 연구·개발 사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여성재단의 설립은 필요하며,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로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나. 주요 내용 검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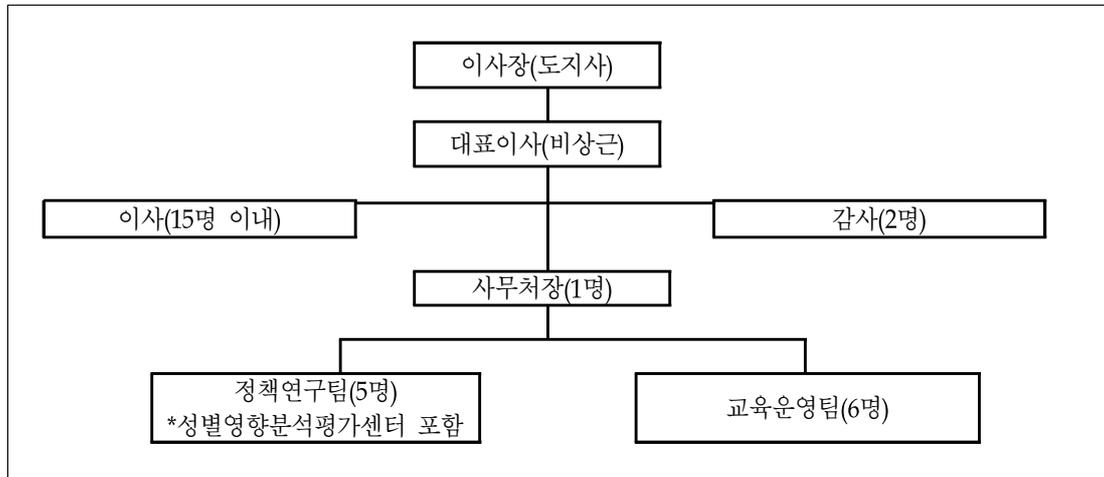
- 안 제4조의 재단 사업 내용과 관련해, 설립 예정인 충북여성재단의 조직구성을 보면, 사무처장 산하에 정책연구팀(5명), 교육 운영팀(6명)을 두도록 계획되어 있음.

- 즉, 안 제4조에 명시된 재단 사업 중 정책연구·개발 사업 외에 나머지 사업들을 교육 운영팀에서 담당해야 하는 데, 다소 업무가 과중될 여지가 있음. 따라서, 교육 운영팀의 업무 분장 및 인력 배치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※ 조직 구성안 및 교육 운영팀 담당 사업 (안 제4조)

- 여성의 문화활동과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
- 양성평등 및 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
- 여성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
- 여성인권 및 리더십 향상을 위한 사업
- 지역전문여성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

-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·협력 사업
- 여성·가족정책 관련 교육



- 안 제5조는 「민법」 제43조에 따라 정관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.
 - 특히, 정관 변경과 관련해 「민법」 제45조 제1항에는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 안 제5조제1항제9호에 ‘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’을 규정하였음.
 - ※ 「민법」제45조(재단법인의 정관변경)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.
- 부칙 제2조에는 기존 ‘충청북도 여성발전센터’에서 채용한 임기제 공무원,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에 대해서 재단 설립 시 재단 소속으로의 전환을 위한 채용특례 조항을 두고 있음.
 - 직원들의 경우, 전원 고용승계 차원에서 본 조항을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 다만, 재단 소속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일부는 공무원 신분이 종결되고, 급여 등 제반 근로 조건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바, 해당 인원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요구되며, 가능한 근로 조건이 유지되어, 전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.

다. 종합 의견

- 본 조례안은 여권 신장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과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 및 교육, 문화 등 제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충북여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,
 - 이미 13개 시·도에서 재단을 설립·운영 중에 있고, 충북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및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거친 바,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되며,
 - 검토 결과, 조례안에 규정된 조항들 또한 내용 및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다만, 본 조례안에는 재단 대표이사의 상근, 비상근 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, 「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」을 보면, 조직구성에 있어, 대표이사를 '비상근'으로 하고 있는 바,
 - 현재 여성재단을 운영 중인 타 시·도의 경우, 13개 지역 모두 대표이사를 '상근'으로 운영 중인데, 충북의 경우 '비상근'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- 또한, 재단 설립 시, 기존 '충청북도 여성발전센터'에서 기 채용했던 임기제 공무원,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소속의 전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.

< 참고자료 : 타 시·도 여성재단 현황 >

타 시·도 여성재단 현황

❖ 별도재단 설립(운영) : 13, 발전연구원 재단기능 병행 : 2 ❖

시도	재단명	설립년도	이사장	대표이사	직원수	초기자본금 (억원)	'15년 운영비 (억원)	사업소 유무 (명칭)	사무(재단)
									사무(사업소)
서울	서울여성가족재단	'07	민간인 (비상근)	대표이사 (상근, 3년)	50명	0.01	40	무	연구,교육
									-
부산	부산여성가족개발원	'02	행정 부시장	원장 (상근, 3년)	20명	15	28	무	연구,교육
									-
대구	대구여성가족재단	'12	행정 부시장	대표이사 (상근, 3년)	12명	2.5	12.6	무	연구,교육
									-
인천	인천여성가족재단	'13	행정 부시장	대표이사 (상근, 3년)	27명	1	12	무	연구,교육
									-
광주	광주여성재단	'11	시장	대표이사 (상근, 2년)	23명 (사무총장)	38	17.5	유 (일가정양립지원 본부,37명)	연구,교육
									1366여성새로 일하기
대전	-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역할 수행							유 (여성가족원,55명)	연구,교육 취창업,양성평등
울산	울산여성가족개발원	'15	행정 부시장	원장 (상근, 3년)	9명	3	5	무	연구,교육
									-
경기	경기가족여성연구원	'04	사회통합 부지사	원장 (상근, 2년)	46명	0.1	30	유 (여성비전센터,75 여성능력개발센 터,54명)	연구,교육
									취창업, 양성평등, 새일사업
강원	한국여성수련원	'08	행정 부지사	원장 (상근,3년)	14명	0.1	27	유 (여성가족연구원 14명)	수련,교육연수
									연구
충남	충남여성정책개발원	'99	행정 부지사	원장 (상근, 3년)	18명	5	16	무	연구,교육
									-
전북	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	'05	행정 부지사	센터장 (상근, 2년)	18명	0.5	12	무	연구,교육
									-
전남	전남여성플라자	'09	행정 부지사	원장 (상근, 3년)	15명	0.5	12	무	연구,교육,성별
									-
경북	경북여성정책개발원	'97	도지사	원장 (상근, 3년)	19명	4	10	무	연구,교육
									-
경남	-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역할 수행							유 (여성능력개발센 터, 19명)	연구,교육 교육,상담
제주	제주여성가족연구원	'14	행정 부지사	원장 (상근, 3년)	11명	10	10	유 (설문대여성문화 센터,17명)	연구,교육,성별
									교육,대관